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기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2
----------	-----

발의연월일 : 2024년 5월 14일

발 의 자 : 강수진, 박영섭, 소형준, 오중균,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진선아

1. 제안이유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 출석하는 증인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법령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비용의 종류(안 제1조 및 제2조)

나. 비용 지급의 예외 (안 제3조)

다. 비용의 지급기준 (안 제4조)

라. 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안 제5조)

마. 비용 지급의 제한 기준 (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나. 협조부서 : 의회사무국

다.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라. 입법예고 : 2024. 5. 17. ~ 2024. 5. 2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에서의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제3항에 따라 증인
· 진술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
한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
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
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
정」 별표 2 구분란의 제2호를 준용한다.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
는 증인등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

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